

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- 48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4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 할 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기타 관련사항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국세징수법 등 참조

4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 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(단위:원)

연 번	세 목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과태료	0178200004530000302	신·준(위켄)	226-19-9476*	23,000,000	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5, 1층 (노고산동)